●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2. 2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이정인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328

Ⅰ.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 안 자 : 이정인 의원(찬성의원 19명)

나. 제 안 일 : 2019. 1. 21.

다. 회 부 일 : 2019. 1.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단서 조항은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의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 법률에서도 제한 규정이 없음.

○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과도한 제한 규정으로써 법익의 실익이 없고, 해당 조례의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조례 제5조제1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 포함)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규정으로 인해 자치구에서 주던 참전명예수당을 폐지하고 있는 실정인 바, 참전명예 수당 지급의 중복지급 등의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해당 단서조항은 삭제가 필요함.

2 주요사항 검토

현 행	개 정 안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 <단서 삭제>

○ 서울시는 2009년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에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왔으며,

○ 조례 제정 시 제5조에 해당 단서 조항은 일부 자치구가 자치조례를 통해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자치구간 형평성 및 중복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었음.

※ 2009년 당시 강남구 3만원, 중구·양천구·송파구 2만원 지급

○ 조례 시행 이후 해당 자치구는 조례 개정(또는 폐지)을 통해 자치구 참전명예수당 제도를 폐지하여 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였음.

○ 다른 조례에 근거한 참전명예수당 중복금지 지급규정이 삭제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나, 향후 자치구가 참전명예수당 지급제도를 별도 신설하여 지급할 경우 자치구 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표 1> 참전유공자 감소 추이 및 연령별 현황자료

▌참전유공자 감소 추이(전체인원, 국가보훈처 등록)

구 분	'15. 5월	'16. 5월	'17. 5월	'18. 5월
유공자 수	68,561	64,824	60,754	57,480
전년대비	-	△3,737 (5.5%)	△4,070 (6.3%)	△3,274 (6.4%)

▌참전유공자 연령별 현황(18년 6월말 기준/ 평균 78세)

합 계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100세 이상
38,179	3,660	15,567	3,851	2,539	9,757	2,586	210	9

※ '16년 5월~'18년 5월(3년간) 평균 감소율은 6.1%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제5조제1항의 단서 조항이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의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 법률에서도 제한 규정이 없고, 과도한 제한 규정으로써 법익의 실익이 없으며, 해당 조례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사료됨.

○ 현재 자치구간 참전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이 동일하고 참전유공자 예우·지원 확대라는 측면에서 해당 단서 조항 삭제는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본 개정안의 개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그러나 자치구가 참전명예수당 제도를 신설할 경우 참전유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그 예우 및 지원이 달라질 수 있는 바, 이는 형평성 및 정의 관념에 배치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 고 1	참전명예수당 지급 추이 및 소요예산

☐ 참전명예수당 지급 추이

○ ‘14~’18년 평균 지급인원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예 산	연간 집행액	월평균 지급인원	전년대비인원
2014년	311억	30,649	51,082	-
2015년	311억	30,685	51,142	△60
2016년	306억	29,182	48,637	△2,505
2017년	306억	26,105	43,508	△5,129
2018년	264억	11,674(6개월)	38,913	△4,595

☐ 참전명예수당 소요예산

○ **‘19~‘23년 소요예산**(5만원증액시/ ‘18년 월평균지급인원에 감소율 6% 적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지급인원	44,000	**36,600**	34,400	32,300	30,300	28,500
전년대비	-	**△2,300**	△2,200	△2,100	△2,000	△1,800
소요예산	26,400	**43,920**	41,280	38,760	36,360	34,200
전년대비증감	-	**증17,520**	△2,640	△2,520	△2,400	△2,160

참 고 2	서울시 자치구 조례 현황

구 분		조 문	조례명
강북구	사망위로금	**제5조의2(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사망위로금	<조례>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 및 대상)** 구청장은 1년 이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9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시행규칙> **제2조(지급금액)**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은 20만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북구	사망위로금	**제3조(지급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참전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1조	

구 분		조 문	조례명
		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제4조(지급금액 및 방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양천구	사망위로금	**제9조의2(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02.> ②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은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개정, 단서 삭제 2017. 11. 02.>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은평구	사망위로금	**제4조(사망위로금 지급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중구	사망위로금·위문금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6.25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6.25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 및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부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위문금의 지급)**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훈의 달에 30,000원 지급[본조신설 2016. 12. 28.] 2. 설, 추석에 30,000원씩 지급 (신설 2017. 11. 1.)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랑구	사망위로금	**제4조(지급금액 및 방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서초	참전	**제4조(지원사업)** 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구 분		조 문	조례명
구	명예수당	사업을 실시한다. 1.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수당 지급 2.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09.12.31 폐지
	사망위로금	**제4조(지급금액 및 방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②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관할 동장의 확인을 거쳐 유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10.02.08 신설 '15.05.04 폐지
	사망위로금	**제14조(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4.20.> 1.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제6호(공상군경)·제9호(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받는 자 ② 위로금 지급대상은 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4.20.> ③ 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한다. ④ 위로금 신청은 유가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⑤ 위로금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송파구	참전명예수	**제4조(지원사업)** 송파구청장은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송파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09.11.09

구 분		조 문	조례명
	당	3. 그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폐지
	사망위로금	**제9조(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위로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1.8>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은 사망일 현재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악구	생활안정지원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4.04.> (전 략) 4.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3조(지원 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4.04.> 1. 명절(설, 추석) 및 연말 위문금·위문품 2. 교육관련 경비 3. 월동대책관련 경비 4. 문화체육활동 경비 5. 긴급구호비 6.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경로의 달, 가정의달,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등 기념일 위문금·위문품 7. 생일 및 질환자 위문금·위문품 8. 급식관련 경비 9. 이사비용 10. 그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4.0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3.04.04.> 1.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지원품 2. 관악구 예산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구 분		조 문	조례명
서대문구	사망위로금	**제8조(사망위로금의 지급)**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라 희생·공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 등록 하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 3.) 2. 위로금은 20만원 이내로 한다. 3. 위로금은 유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진구	생활안정지원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전 략) 4.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제3조(지원범위)**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6.30>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문화체육 활동경비 지원 4. 월동대책비 지원 5. 긴급구호비 지원 6.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등 개선 지원 7. 명절 위문금품 지원 8. 호국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청소년의 달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9.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비 지원 <신설 2009.06.15> 10. 기타 지원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구의회의 승인, 확정된 사업과 규칙으로 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품의 범위 안에서 지원 수준을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8.06.30> 1.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 2. 광진구 예산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구 분		조 문	조례명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광진구에 배분된 금품	
강동구	사망위로금	**제9조(사망위로금 지급 및 신청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2017.12.27.>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관내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에 제출한 경우 구청장은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유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다.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구	사망위로금	**제15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9.17> 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 ③ 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④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9.17>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종로구	사망위로금	**제15조(사망위로금 등 지급)**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희생·공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및 조문용품(근조화, 근조기)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 분		조 문	조례명
		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 ③ 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서식의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순위로 하여 같은 법 제13조를 준용한다. ⑤ 구청장은 설날,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1명당 5만원 이내의 위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영등포구	사망위로금	**제11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12.12, 2017.07.13.> ②「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요건은 제1항의 단서조항과 같다. 다만, 제1항 및 다른 조례에 따라 희생·공헌자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12.12> ③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3.07.25, 2013.12.12> ④위로금은 유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2017.07.13.> ⑤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가족의 범위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2>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서구	사망위로금	**제9조의2(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라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신설 2011.6.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 분		조 문	조례명
		람(개정 2018.4.25.)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8.4.25.)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8.4.25.)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신설 2018.4.25.) 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 ③ 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전자정부법」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4.25.)	
용산구	사망위로금	**제6조의2(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6.11.04> ② 사망위로금은 20만원 정액을 지급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유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로구	사망위로금	**제11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조제6호에 따라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로금 지급대상은 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로금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 분		조 문	조례명
		법률」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위로금을 지급받을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른다.	
	생활안정지원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 략) 4.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교통보조비 지원 4.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5. 명절위문금품 지원 6. 생신위문금 지원 7. 사랑 음료 지원 8. 영정사진 지원 9. 월동대책비 지원 10. 긴급구호비 지원 11.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기념일 또는 기념주간 등의 기념행사 개최·후원 및 위문금품 지원 12.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구로구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자치구의 조례상 참전명예수당의 명칭으로 규정된 사례는 없었고, 사망위로금(강북구, 동작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위문금(중구)의 지급 근거를 두고 있음